

CCTV 관리계획서



제일너싱홈
JEILNUASINGHOME SINCE2003

제일너싱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일너싱홈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이영숙

나. 운영(담당)자: 강연하

다. 모니터링(담당)자: 이영숙, 김인환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64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거실 3대, 복도 9대, 침실 33대(각 침실), 현관 1대

2.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2대, 엘리베이터 1대, 식당 2대

3. 기타 12대(외부포함)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주 출입구 및 후문 출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이상)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8조(안내판의 설치)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설치장소(촬영범위) 및 시간
3. 책임자 및 연락처

가. 안내판 규격 : 40cm x 30cm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용도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나. 부착 장소 : A동 입구, B동 입구, 중앙현관 입구, 강당 입구, CCTV 보관소 등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

③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9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10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1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 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5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

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3조제 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 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운영 관리를 위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본 자료는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8.)」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 각 분야별로 점검해야 할 내용을 숙지한 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크리스트 항목은 필요시 장기요양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보 건 복 지 부
요 양 보 험 운 영 과

CONTENTS

◆ (양식) CCTV 설치·운영 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1
---------------------------------------	---

(작성예시) CCTV 설치·운영 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5
---------------------------------------	---

(참고) CCTV 설치·운영을 위한 관리사항	6
--------------------------------	---

① CCTV 설치 및 관리	6
----------------------	---

② CCTV 운영 및 관리	7
----------------------	---

③ CCTV 열람 및 제공	9
----------------------	---

④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10
-----------------------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운영 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기본 점검사항: 최초 설치('23.11.24) 및 매년 초

구 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 Y	☐ N
1	저장장치는 130만 화소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추고, 24시간 지속적으로 촬영(녹화) 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	☐
2	필수 설치구역에 카메라가 1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가? * 각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 침실, 현관(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	☐	☐
3	카메라는 실내가구 또는 건축물 구조상 촬영범위가 축소되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가?	☐	☐
4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와 보안 등을 위해 추가 설치 필요한 곳이 있는가?	☐	☐
5	CCTV 안내판은 기재 사항이 모두 작성되고, 출입구와 주변 경계부(담장)에 설치되어 있는가?	☐	☐
6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와 그 보호자 및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는가?	☐	☐
7	모니터는 접근권한이 있는 지정된 종사자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	☐
8	저장장치는 별도의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시설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
9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팅암호와 로그인 암호를 설정하고,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	☐
10	침실 촬영을 위해 사전에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했는가?	☐	☐

◆ 주 1회 점검: ()년 ()월

점검 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 항목
CCTV 설치 · 운영 점검		1주		2주		3주		4주		5주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점검일자	점검일자	점검일자	점검일자	점검일자	점검일자	점검일자	점검일자				
1	카메라, 모니터, 저장장치 등의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	☐	☐	☐	☐	☐	☐	☐	☐	☐		1-1
2	영상정보 녹화기록이 누락되지 않고 60일 이상 보관되고 있는가?	☐	☐	☐	☐	☐	☐	☐	☐	☐	☐		4-1
3	영상정보 삭제 후 영상물 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영상정보 이용·열람 조치 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	☐	☐	☐		3-3 4-2

◆ 월 1회 점검: ()년 ()월

점검 항목		점검결과		점검 일자	조치사항	확인 항목
		적합	부적합			
① 설치 및 관리						
1	저장장치는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고 있는가?	☐	☐			4-1
2	13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로 화면 속 인물의 행동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는가?	☐	☐			1-1
3	카메라는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있는가?	☐	☐			1-1
4	카메라는 필수 설치구역에 1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가?	☐	☐			1-2
5	카메라는 실내가구 또는 건축물 구조상 촬영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설치되었는가?	☐	☐			1-2
6	CCTV 안내판은 주 출입구와 주변 경계부(담장)에 설치되어 있는가?	☐	☐			1-3
7	CCTV 안내판의 기재 사항은 현재 해당기관의 CCTV 설치·운영상황과 동일한가?	☐	☐			1-3
② 안전성 확보 조치						
1	모니터는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운영담당자 등 지정된 자에 한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가?	☐	☐			2-3
2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	☐			2-3
3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잠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	☐			2-3
4	영상정보 관리 컴퓨터에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를 설정하고, 로그인 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였는가?	☐	☐			2-3
5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로만 제한하고 그 외에는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	☐	☐			2-3

점검 항목		점검결과		점검 일자	조치사항	확인 항목
		적합	부적합			
③ 운영 및 관리기준						
1	내부 관리계획에 책임자 지정,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등의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			2-1 2-2
2	내부 관리계획의 기재 내용과 현재 설치·운영 사항은 동일한가?	☐	☐			2-2 2-4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부 관리계획(CCTV 설치현황 등)'이 실제 설치·운영 현황과 동일하게 공시되고 있는가?	☐	☐			1-4
4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상정보는 최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삭제하고 있는가?	☐	☐			4-2
5	수급자 및 그 보호자가 열람 요청 시, 가이드 라인에 명시된 열람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열람하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			3-1 3-2 3-3 3-4
6	열람요청서, 결정통지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의 문서를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	☐			3-1 3-3
7	외부 전문기관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 교육 및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관리하고 있는가?	☐	☐			2-5

(예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운영 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예시>

① [참고] 'CCTV 설치·운영을 위한 관리사항' 확인 항목의 해당 번호에 맞는 점검내용 확인

확인 항목	카메라 성능 기준
1-1	① 화질 등급이 고해상도(HD, High Definition) 이상 - 가로픽셀 1,280, 세로픽셀 960, 해상도 130만화소 이상, 초당 10장 이상 프레임 저장기능 ... (중략) ...

② 점검결과 작성 : 체크리스트의 내용 확인 후 적합/부적합 체크, 점검일자 기록

③ 부적합의 경우 즉시 개선조치하고 조치사항 란에 관련내용 기록

◆ 주 1회 점검: 2023년 8월

점검 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 항목
CCTV 설치 · 운영 점검		1주		2주		3주		4주		5주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점검일자		점검일자		점검일자		점검일자		점검일자			
1	카메라, 모니터, 저장장치 등의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	☐	☐	☒	☒	☐	☐	☐	☐	☐	(8/11)모니터 고장으로 수리의뢰, 대체장비 임대 (8/17)모니터 수리완료 및 교체	1-1
		8/4(금)		8/11(금)		8/18(금)							
2	영상정보 녹화기록이 누락 되지 않고 60일 이상 보관 되고 있는가?	☒	☐	☒	☐	☒	☐	☐	☐	☐	☐		4-1
		8/4(금)		8/11(금)		8/18(금)							
3	영상정보 삭제 후 영상물 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영상정보 이용·열람 조치 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	☐	☐	☐		3-3 4-2
		8/4(금)		8/11(금)		8/18(금)							

[참고]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운영을 위한 관리사항

점검 분야 ①

CCTV 설치 및 관리

확인 항목	카메라 성능 기준
1-1	① 화질 등급이 고해상도(HD, High Definition) 이상 - 가로픽셀 1,280, 세로픽셀 960, 해상도 130만화소 이상, 초당 10장 프레임 저장기능 ② 60일 이상의 저장용량,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도록 설정하여 설치 ※ 임의조작 X, 녹음기능 X, 침실 및 공동거실(복도 포함)은 동작감지 기능으로 설정 X
확인 항목	카메라 설치 구역
1-2	① 필수 설치구역인 각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 침실, 현관(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의 카메라 설치 ② 실내가구 또는 건축물 구조상 촬영범위가 축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③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시설 내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 ※ 필수 설치장소 외, 추가 설치 시 수급자, 보호자, 종사자와 협의하여 동의 후 설치해야 함
확인 항목	안내판 설치
1-3	① 분실 또는 훼손 여부 확인 ② 시설 출입구, 주변 경계부(담장)에 모두 설치 ③ 안내판 기재 사항 확인, 실제 설치 및 운영 일치 여부 확인 * 연락처: 유선 연락처(개인 핸드폰번호 X) ※ CCTV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출입 시, 본인의 영상정보가 촬영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기 위해 반드시 안내판을 출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확인 항목	정보공시 관리
1-4	① 정보공시 내용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대수, 장소, 기기 종류, 카메라 성능(화소), 운영방식 등 현황' 일치 여부 확인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공시 내용 변경

·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p.4 ~ 6, 별지 제 13호 서식

확인 항목	책임자 등 지정
2-1	① 관리책임자(장기요양기관의 장),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 -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 - 운영담당자: 일상적인 관리·유지, 열람 요청의 접수·처리 등 관리책임자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 - 모니터링 담당자: 특정시간(야간시간)에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업무를 수행 ※ 영상정보 접근권한 부여 시, 종사자 중 특정인으로 지정해야 함 (불특정인 지정 X)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자료 유출,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③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확인 항목	내부 관리계획
2-2	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상황에 맞게 내부 관리계획 수립(별지 제 1호 서식 참고) ②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설치·운영 사항 동일 여부 ※ 카메라 대수 및 위치,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촬영 및 녹화 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 장소, 안내판 등의 변경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함 ③ 월 1회 이상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된 내용 이행 여부 확인 및 준수 ※ ①에 명시된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④ 내부 관리계획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수급자, 보호자, 종사자 등 정보 주체에게 공지 ※ 내부 관리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내부 관리계획을 개정하여 재공지해야 함
확인 항목	안전성 확보 조치
2-3	① (모니터 설치) 관리책임자 또는 지정된 직원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모니터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함(공개된 장소 설치 X) ② (저장장치 보관) 접근이 제한된 별도 장소에 저장장치 보관, 잠금장치 설치 -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

	③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저장장치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와 로그인 암호 설정 - 해킹 방지 등 보안을 위해 초기 설정 암호 변경, 주기적으로 암호 변경하고 관리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 -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는 운영담당자 등 영상정보 접근권한이 있는 자만 공유 ④ (영상정보 접근 제한 조치) 영상정보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에 한해서만 영상정보를 이용·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 -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권한 부여자 외 접근 통제
확인 항목	설치·운영·점검 등
2-4	① 영상정보 저장일수, 성능 이상 등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② 기기 이상 발견 시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주 1회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기기 고장 등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기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리기간 중 영상정보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CCTV 장치 임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영상정보가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확인 항목	사무의 위탁 <외부 전문기관에 CCTV 관리·유지보수업무 등 일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
2-5	① CCTV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 일부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 시, 영상정보 조작·유출 등 철저한 관리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운영업무 및 책무 전체에 대한 위탁 불가 ②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탁자 교육 및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점검
▶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p.11 ~ 14, 별지 제 1호, 10호, 12호 서식	

확인 항목	열람의 요청
3-1	①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일 경우, 정당한 열람 절차를 통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열람요청서(별지 제 6호) 제출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10일 이내에 열람요청에 대한 결정 사항을 결정통지서(별지 제 7호)로 열람 요청자에게 통지 - 단, 학대 증후가 명시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열람 요청자와 협의 된 경우에는 즉시 열람케 해야 함 ② 열람은 결정통지서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③ 관계 공무원, 노인 안전 업무 수행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열람 요청 - 관계 공무원의 신분증 및 공문서 등의 증표로 열람요청서 같음하여 즉시 열람 조치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서류로 열람요청서 같음하여 즉시 열람 조치
확인 항목	열람권자 확인
3-2	① 열람 요청자가 수급자의 보호자인지 여부 ② 보호자 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입회자인지 여부 (예 : 관계공무원 및 노인 보호전문기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영상정보 열람에 동의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열람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보호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관리책임자)이 할 수 있음
확인 항목	열람 범위 및 장소
3-3	① 열람의 범위는 요양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 ② 열람은 해당 시설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 -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 10호)에 작성하여 관리하고 3년간 보관 ③ 영상정보는 열람에만 사용되고 영상정보를 열람한 보호자 등이 열람 후 알게 된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 보호자는 열람 전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별지 제 15호) 작성
확인 항목	자료의 제공 등 제한
3-4	① 영상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정보주체 동의, 다른 법률 규정 등) 외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불가 ② 보호자가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 식별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마스킹 처리 등)를 해야 함
▶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p.15 ~ 19, 21 ~ 22, 별지 제 6호, 7호, 10호, 15호 서식	

확인 항목	영상자료의 저장
4-1	① 영상정보 보관기관이 60일 이상 되도록 설정되어 저장·보관되고 있는지 확인 - 영상정보 접근권한이 있는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등 지정된 종사자가 점검 ※ CCTV 영상자료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상시 촬영·녹화해야 하며, 침실 등 수급자의 주 생활 장소는 동작감지기능 설정·녹화 불가함
확인 항목	영상자료의 삭제
4-2	① 기록된 영상자료는 최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삭제 조치 - CCTV 영상물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별지 제 11호)에 기록 관리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열람 요청 또는 사고 관련 영상으로 영상자료를 추가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60일)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함 ② 종사자 등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 존재 유무 확인을 요청(별지 제 6호) 할 수 있고, 보관기관이 경과한 영상자료는 삭제를 요구(별지 제 8호) 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p.20 ~ 21, 별지 제 6호, 8호, 9호, 11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동의서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장소]

- ☒ 침실 ☒ 공동거실(복도포함) ☒ 현관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 엘리베이터 ☐ 기타()

-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 보호자 대상]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종사자 대상]

성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서명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보호자(종사자) 연락처:

○ ○ ○ 대표자 귀하

[별지 제 7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제한 [] 제공 등 기타)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오후 ~ 오후)	열람 장소	
통지내용			
열람방법	직접방문을 통한 열람·시청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 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 ○ 대표자

[별지 제 8호 서식]

정 정 · 삭 제 청 구 서				처 리 기 간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 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 일 명 칭		열 람 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 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귀하					

[별지 제 9호 서식]

번 호		정 정 (삭 제)조 치 결 과 통 지 서			
제 호					
① 수 신	_____ 귀하 (주소 : _____)				
② 개 인 정 보 파 일 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정 정 (삭 제) 결정 및 거부내용					
⑤ 정정(삭제) 거부사유 ※ 거부시만 작성					
⑥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대표자					

[별지 제 10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 · 열람 · 제공)

번호	구분	이용일자	요청자 (성명, 연락처)	파일명/형태/내용	이용목적 / 사유	이용 시간	이용 장소	담당자		비고
								성명	서명	
1	☐ 이용 ☐ 제공 ☐ 열람									
2	☐ 이용 ☐ 제공 ☐ 열람									
3	☐ 이용 ☐ 제공 ☐ 열람									
4	☐ 이용 ☐ 제공 ☐ 열람									
5	☐ 이용 ☐ 제공 ☐ 열람									

보호자(수급자)동의서(CCTV침실촬영 동의서)

저장

※CCTV침실촬영 동의서 이미지 및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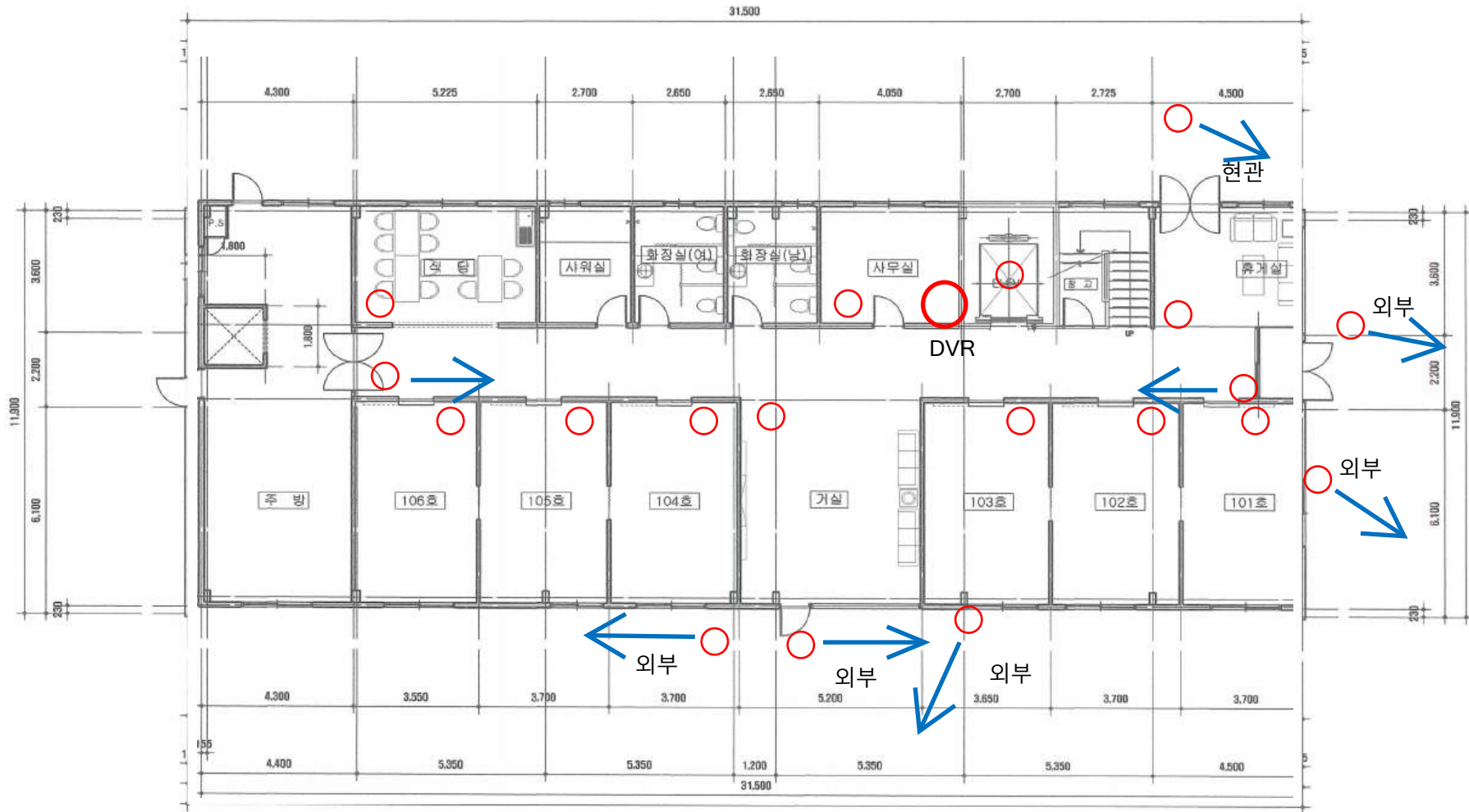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제일너싱홈 (1-41460-00023)
- 동의 기간: 2024-01-01 ~ 2024-12-31
※ 입소하여 생활 중 동의(반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보호자 연락처: 

제일너싱홈 대표자 귀하

CCTV설치 장소

제일너싱홈

구역	A1	A2	B1	B2	C1	계
거실	1	1	1			3
복도	2	2	2	3		9
침실	6	10	7	10		33
현관	1					1
물리치료실			1			1
프로그램실				1	1	2
식당	1	1				2
엘리베이터	1					1
기타	7		4	1		12
계	19	14	15	15	1	64



1층 평면도 (A동)
SCALE: 1/100

CCTV: 19

침실: 6

PROJECT TITLE															
NOTE															
<table border="1">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				△				△			
△															
△															
△															
수용인원 TEN. NO.	층 수 FLOOR	내 역 ADDRESS	제 작 DRAWN												
cha & green 참 & 그린 ARCHITECTS/ENGINEERS 건축사무소 TEL: 02-1330-4537 02-1330-4530 FAX: 02-1330-4538															
제 작 DRAWN BY															
검 토 CHECKED BY															
제 작 DRAWN BY															
제 작 DRAWN BY															
제 작 DRAWN BY															
제 작 DRAWN BY															
1층 평면도 (A동)															
제 작 SCALE															
1/100															
제 작 DRAWN NO.															
제 작 DRAWN NO.															



SCALE 1/100

침실:10

cha-m & green
참 & 그린
ARCHITECTS&ENGINEERS
건축사 사무소
Tel: (031)33&M837
(030)33&-4838
FAX: (031)339-4838

DESIGNED BY

DATE ORDER BY

5000 LIMITED

08-01-2008 10: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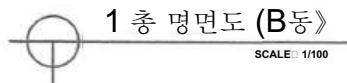
DATE:

5299 04/04/00 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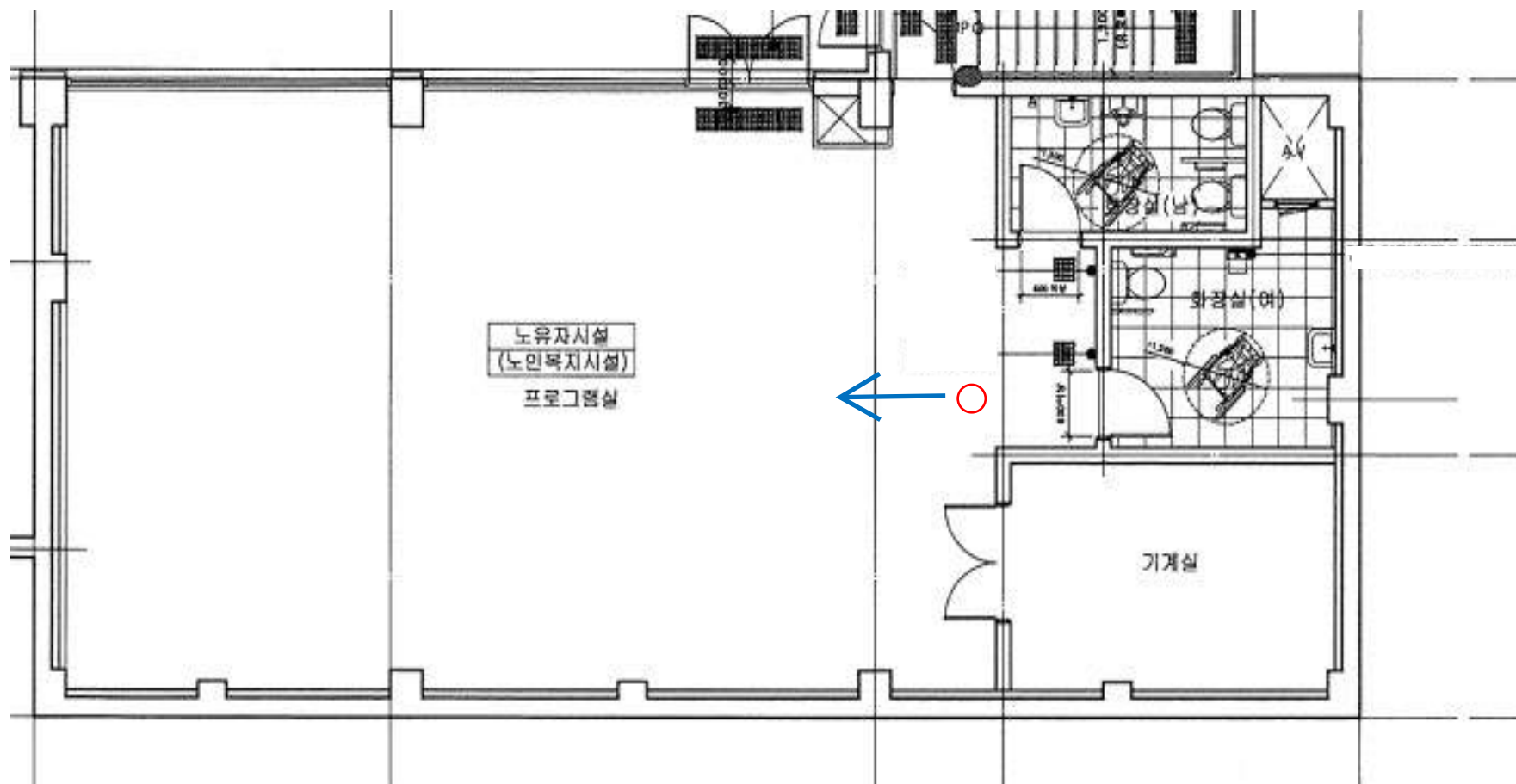
2중 명면도 (A5)

SCALE 1/100
E8T9B OHMfNO NO.

SA 1007-44 19417 100.



침실:7



프로그램실

CCTV:1





SAM KYUNG
삼경 SAFETY GLASS
L 2002 TF Ⅲ급
원본유리/MADE IN KOREA

CCTV 설치안내

목적

Purpose

수급자 안전,요양시설 보안,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영 시간

Running Time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치 장소

[촬영 범위]

Set Up Place

거실, 침실, 현관, E/V,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식당

책임자

Contact

책임자 : (시설장)이영숙 031-323-3007

운영자 : (사무국장)강연하 031-323-3007

위탁업체:

SJC korea

1668-4292